자동차대수 1백만대 넘어섰는데 주유소는 제자리 걸음이라니

□서울 자동차 1백만대 돌파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자동차가 1백만대를 돌파했다. '70년에 6만대, '80년 20만7천대에 불과했던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는 '8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하루평균 6백70대, 매2분당 1대꼴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증가가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오는 '92년에는 1백61만대, '93년에는 2백만대에 육박하고, 오는 2천년에는 5인가족기준 1가구당 1대꼴인 2백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인 2백7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 운행중인 차량이 2천년에는 서울 1개 도시에 운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80년대, 특히 '88년 이후의 전국차량증가현황을 보면, '88년 12월말에 전국적으로 2백3만5천대에 불과하던 자동차가 '89년 동기에는 2백65만대, '90년 1월말에는 2백71만대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를 각 시·도별로 보면 6대도시의 경우 서울이 1백만6천대로 가장 많고, 釜山 23만9천대, 大邱 17만4천대, 인천 11만2천대, 大田 6만9천대, 光州 6만1천대의 순이다.

또 6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京畿 32만8천대를 비롯, 慶南 18만8천대, 慶北 13만4천대, 全北 7만9천대, 全南 7만5천대, 忠南 7만4천대, 江原 7만3천대, 忠北 6만1천대, 濟州 3만3천대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륜자동차는 전국에 16만2천6백49대가 있다.

이런 자동차증가추세와는 달리 주유소의 증가는 이에

金 守 鎭
〈교통신문 기자〉

미치지 못해 오너드라이버는 물론 모든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단편적으로 지난 '88년 12월말에는 전국 자동차등록대수 2백3만대에 주유소가 2천7백79개로 1개주유소가 평균 7백32대의 자동차를 담당했으나, '89년동기에는 자동차 2백66만대에 주유소가 2천9백61개로 8백98대로 늘었고, 90년 1월말에는 9백10대로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점이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주유소 증가, 차량증가에 못미쳐

이는 주유소의 완만한 증가가 자동차의 급증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유소설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각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 '88년말 1개 주유소가 담당하던 차량대수가 2,658대에서 '89년 12월말 3,282대, '90년 1월말 3,301대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90년 1월말 1개 주유소가 담당하는 차량대수가 3,301대로 이는 전국평균 910대보다 무려 3.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타지역보다 주유소의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등 대도시는 전국 주유소담당 자동차대수의 평균수치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유소를 신설할 경우 신설허가기준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및 시·도 고시, 소방법시설기준령, 건축법시행령등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에 따르면 주유소 신설시 인적제한, 설치위치, 지역제한,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 부지규모, 저장시설등의 제반시설과 취급유종에 대한 규제가 있다.

특히 이들 규제 가운데 주유소 신설에 가장 장애가 되고있는 요인은 주유소 상호간 거리제한규정이다.

이 규제는 서로 인접한 주유소간 일정거리이상을 유지토록 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주유소의 건실한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의 여건변화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주유소의 설치는 대로변이라는 한정된 장소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고, 설혹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받지 않고 신설할 수 있어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로변토지는 매우 다양한 용도가 있어 용도별 투자이익이 극대화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유소 신설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유소 신설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거리제한 규정 완화해야

이에따라 주유소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유소간 거리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자동차가 불과 얼마없던 시절과 비교해 대낮에도 교통소통에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주유소의 숫자가 과거와 거의 같은 숫자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주유소 신설이 여러 제한규정으로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 허가제와 정제업자의 유통부문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소비자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유산업의 구조를 개선키로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자부가 최근 마련한 '90년대 주요 석유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취득등을 금지한 3·14조정명령을 연내에 폐지, 현재 주유소 설치기준인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상호별 거리제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주유소가 게시하고 있는 상표(*Poll Sign*)와는 달리 다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복수거래가 만연, 소매단계에서의 계열화는 사실상 붕괴된 실정이다.

이런 복수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유회사의 경우 정제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판매망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나, 정부의 3·14조치로 직영유통기구인 주유소의 신규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에 자사의 제품을 판매해야 함은 물론 타사와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 주유소는 이런 정유사의 공급경쟁을 통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정유사의 제품을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같은 복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유회사의 유통시장에 대한 과다지배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인 유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난 81년 3월 14일 조정명령을 통해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 신규취득과 정유회사 직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 신규취득을 금지시켰다.

이런 3·14조정명령은 결론적으로 정유부문과 유통부문의 이해가 상충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정유와 유통부문 괴리, 문제점 해결해야

이에따라 정유부문과 유통부문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우선 정유회사의 경우 주유소와의 관계에 있어 많은 거래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주유소 확보를 위한 무리한 외상기일의 연장과 자금지원, 주유소와의 계약경신시의 번거로움, 그리고 판매량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계획수립의 어려움 및 시장정보의 신속·정확한 수집곤란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3·14조정명령을 수정, 정유회사의 주유소 취득, 운영이 허용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없이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유회사의 주유소 소유는 일정한도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부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수송물동량의 증가와 자동차의 증가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총에너지부문에서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 또한 급증일로에 있다.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원이 석유류이고, 이 대부분이 주유소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현 유통상황에서 주유소의 증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미비하던 때와는 달리 이 부문의 에너지수요가 산업용수요에 버금가는 현시점에서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주유소의 신설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1백만대에 불과하던 시절에 규정한 제반 주유소 신설기준을 2백만대를 넘어 3백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에도 계속 고집하고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급변하는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는 조치이다.

□주유소, 단순히 기름넣는 장소 아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자동차문화의 생활화로 주유소의 기능이 단순히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소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할 때이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편리한 자동차생활을 추구하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로의 기능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유소 경영의 다변화를 유도키 위한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도 신설기준규제와 함께 완화되어야 한다.

굳이 美國등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유소가 수퍼나 식당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주유소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정은 소방법에 극히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석유사업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부는 지난 87년 4월에는 「주유소의 편의시설 설치 및 현대화지침」을 시달, 각 시·도의 고시를 개정, 주유소의 부대사업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영업범위가 관련된다는 법규인 소방법, 건축법, 환경법, 고물영업법,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소의 부대사업 및 시설에 대한 제반규제는 점차 완화되어야 하며, 주유소의 영업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관계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해에는 국내석유제품소비는 경제성장(*GNP* 6.5%증가)의 저조에도 불구, 저유가의 지속과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수송용의 주도하에 가정·상업용 석유소비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4.6% 증가한 287,253천배럴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유종별로 보면, 휘발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전년대비 37.8% 늘어난 18,707천배럴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무연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23.3%포인트 늘어난 48.2%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용부문의 소비도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18.3% 증가한 90.394천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 주유소의 증가는 지난 '88년에 허가

된 업소가 302개로 이중 293개가 영업을 했고, 9개가 허가를 받았으나,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89년말에는 허가된 업소가 350개로 늘었으나, 영업을 개시한 업체는 전년대비 9개소가 늘어난 302개에 불과, 수송용 석유부문의 급증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89년말에는 2천9백61개의 주유소가 영업을 해 전년대비 182개가 증가했다.

□석유소비 급증추세-수송용이 주도

특히 올해들어 2월말까지 국내석유소비증가율는 전년동기증가율 17.2%보다 무려 6.5%포인트 증가한 23.7%의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유소 신설 및 허가된 미개업주유소의 활용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연탄에 의한 난방용 수요가 석유로 전환되고, 자가용차량의 증가에 기인한 수송용 유류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석유소비증가의 주원인이다. 매년 자동차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수송용 석유의 소비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 주유소의 증가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3·14조정명령으로 인한 주유소 신설의 억제조치가 시급히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감에 따라 주유소 신설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굳이 주유소 1개소가 자동차 몇대를 담당해야만 효율적이냐 하는 산술상의 수치계산을 떠나 최종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해주는 장소로서의 주유소의 역할을 고려할때 주유소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중·소업자를 보호치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뒷전에 물리친 주유소 신설이 아닌 정유업자, 중·소주유소업자, 이용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의 집행·수립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정부규제로 인한 주유소 설립제한조치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고 자율에 입각한 정책의 개선이 아쉽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고 덤핑가격 등으로 얼룩질 과열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주유소 증설과 아울러 아루어져야만 효율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1988년 12월말			1989년 12월말			1990년 1월말		
	자동차 등록대수	주유소 현황	1개주유소 가담당하는 자동차수	자동차 등록대수	주유소 현황	1개주유소 가담당하는 자동차수	자동차 등록대수	주유소 현황	1개주유소 가담당하는 자동차수
서 울	778,940	293	2,658	991,245	302	3,282	1,006,746	305	3,301
부 산	187,609	180	1,042	234,936	179	1,312	239,533	178	1,346
대 구	131,445	128	1,027	171,294	128	1,338	174,321	128	1,362
인 천	81,794	67	1,221	109,369	70	1,562	111,741	70	1,596
광 주	44,333	46	964	59,978	46	1,304	61,523	46	1,337
대 전				68,062	68	1,001	69,483	69	1,007
경 기	237,453	413	575	320,266	446	718	328,238	456	720
강 원	53,957	163	331	70,623	178	3,968	72,505	178	407
충 북	44,028	167	264	59,293	193	307	60,607	190	319
충 남	102,314	292	350	73,045	247	296	74,349	243	306
전 북	59,471	215	277	78,230	235	333	79,901	242	555
전 남	54,305	194	280	73,151	203	360	74,741	203	369
경 북	98,094	281	349	131,455	300	439	134,304	300	448
경 남	138,370	308	449	184,924	334	554	188,746	337	560
제 주	23,335	32	729	32,727	32	1,023	33,269	32	1,040
計	2,035,448	2,779	732	2,658,598	2,961	8,982	2,710,007	2,977	910

〈註〉 주유소수는 영업기준임.